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4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02173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A종중

피고, 피상고인B종중

판결 선고2015. 8. 27.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2021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K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